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나2006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천성국

변론 종결 2020. 11. 10.

판결 선고 2021. 1. 12.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소15583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1. 1. 12.까지는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6. 7. 18:04경 서울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그 왼편에서 서서히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5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G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7.2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 : 80%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9. 8. 20. 우선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66,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9. 8.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위 사고 당시에 피고 차량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쪽으로 다가가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한 점,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도로 쪽으로 향해 운전석

문을 크게 열었으며(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후사경 등으로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사고가 발생한 점, 특히당시 상황에서 원고 차량으로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 앞에서 갑자기 열린 피고 차량의 문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66,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9.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¹⁾,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므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원, 판사 유동균, 판사 윤동연

1) 피고(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참조).